

계약업무규정

제정 2017. 11.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적 근거와의 관계)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 라 함은 유형·무형의 재화 및 용역 등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
2. "물품" 이라 함은 기계기구, 집기비품, 건축물, 차량운반구, 도서, 박물관 소장품, 수목 등을 말한다.
3. "제조" 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용역" 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추정가격"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예정가격" 이라 함은 계약 체결 이전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해두는 가격으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실 거래가격, 공사·용역 등 계약에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실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7. "수의계약" 이라 함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8. "경쟁입찰" 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내용을 공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9. "실례가격" 이라 함은 대학에서 물품을 구매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거래 실례를 조사한 가격 및 사회 통념적 가격을 말한다.
10. "관리부서" 라 함은 교육지원처를 말한다.
11. "사용부서" 라 함은 스킨, 행정부서, 부속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약요구)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구매·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 용도, 품질, 성능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품 구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공사의 경우 협조전으로 대체한다.
2. 제조를 청구하는 경우 도면, 시방서를 첨부해야 하며,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 소모품은 「실험실습물품 관리규정」 제26조의 절차를 따르며, 소액의 일반 행정소모품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부서”에서 자체 구매 할 수 있다.
4. 교육·연구를 위한 기자재는 “실험실습물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것을 제1호의 행위로 본다.

제5조(계약절차)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물품 구매·공사 또는 용역계약 청구 서류 접수
2. 예정가격 조사
3. 구매방법(입찰, 수의계약) 및 업체선정
4. 계약서 작성 및 발주
5. 검사 및 검수 확인
6. 자산등재(공사·용역 제외)
7. 물품대금 지급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액계약 : 계약에 부칠 규격서 사항의 총 가격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
3. 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동종 물품의 제조·공급 등을 단위당 가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4. 확정계약 : 건설에서 설계가 미완성된 상태로 예상물량을 확정금액으로 계약하고 완료 후 정산하는 계약

5. 공동계약 : 공사·제조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계약

제7조(분할계약의 금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또는 단일 사업의 구매·제조·용역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구입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¹⁾

1.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 등 하자의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한자와 계약하는 경우
4. 공급자와 분할계약 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대학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의계약)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²⁾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에 부질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처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시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 나.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다.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설비확충 등의 경우 시공사 외에 다른 자로부터 공급 받게 되면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
 - 마.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 훈련계약 등 용역 계약의 경우
 - 바.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³⁾
4. 국가유공자 복지공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직접 구매·제조하는 경우⁴⁾

②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4708호, 2017.3.21. 제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16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6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4685호, 2017.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6조 5호

4)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254호 2016.5.2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839호, 2017.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4923호, 2017.10.24.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물품 구매·제조·용역으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⁵⁾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⁶⁾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4.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공사

③ 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해 견적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학술연구 용역,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농·수산물 및 음식물, 기존 시설물·기자재 유지보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⁷⁾

④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업체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⁸⁾

⑤ 제1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⁹⁾

1.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제1호, 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제10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¹⁰⁾

⑦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¹¹⁾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미만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미만

제9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6조

6) 「건설산업기본법」 제14708호, 2017.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6조 5호, 동시행령 제30조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6조 5호, 동령 제30조 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10조(소액수의 계약절차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13865호, 2016.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2017.7.26.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7조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8조, 제29조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7조의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1호, 2016.7.28., 「조달청고시」 2017-20호, 2017.9.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¹²⁾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 사실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기존 시설물·기자재를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곤란하거나, 호환성에 문제 또는 예상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5.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구매 실례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경우¹³⁾
 6.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7.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8. 문구류, 공구류, 잡품류 등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10조(경쟁입찰)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경쟁입찰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¹⁴⁾ 다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¹⁵⁾

1.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체납액이 없는 자¹⁶⁾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 등록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③ 경쟁입찰에서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경쟁이 성립될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¹⁷⁾

④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¹⁸⁾

⑤ 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경쟁입찰 : 참가 자격을 정할 때에 해당 업종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입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30조,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제10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인용(현장에서 구매하는 물품 등에 대한 조항)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11조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76조

16)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0조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20조

2.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목적에 따라 계약 이행에 적합한 자를 지명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는 입찰
 3. 제한경쟁입찰 : 경쟁입찰에 일정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어 경쟁하는 입찰
 4. 일괄입찰 :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의 특성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포함하는 입찰
 5. 2단계 경쟁입찰 : 물품 구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을 경쟁하는 입찰
-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제안서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¹⁹⁾
1. 평가위원은 교직원 및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80: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 할 수 없다.
 4.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의 적격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입찰공고) 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²⁰⁾

1. 입찰 평가 방법 및 내용
2.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3.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²¹⁾

③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입찰의 경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2항에 의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6조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35조

⑤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공고 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자는 입찰서 및 입찰공고 사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2)

②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참가신청서에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④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국채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다.23)

⑤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평가방법은 제6조 2항에 따라 가격 또는 기술평가와 가격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경쟁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4)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2. 제출한 입찰서 및 해당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한 경우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5)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6)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3. 경매에 부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6. 외자물품구입 중 직수입하는 경우
7. 제1호, 6호의 경우에는 발주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보증금) ① 계약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37조, 제42조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43조,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2016.1.1. 제12조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44조,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2016.1.1. 제12조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48조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49조

호의 경우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 농협, 축협, 수협 등 각종협동조합 등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대학과 장기간 거래실적이 있고 부당업체로서 입찰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은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국채증권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보증금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²⁷⁾
1. 물품 구매·제조·용역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공사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제15조(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만료일로부터 계상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²⁸⁾

1. 공사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별표 4)를 따른다.
 2. 물품 구매·제조·용역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의 준공, 물품 구매·제조·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에 있어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2/100 이상, 10/100 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²⁹⁾

1. 물품 구매·제조·용역의 경우 1.5/1000
 2. 공사의 경우 1/1000
 3. 물품의 수리·가공의 경우 2.5/1000
 4. 식료품 제조·구매의 경우 3/1000
-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증금 귀속) 제14조, 제15조에 의거 납부된 보증금의 대학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보증기관에 통지하고 대학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50조, 52조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325호, 2017.9.19.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11호, 2017.7.26. 제51조, 동법 제74조, 동 시행규칙 제75조,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3월 1일 이후는 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규정폐지) 대학 「구매관리규정」은 폐지하며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계 약 자	발 주 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위임자) :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W) VAT 포함
	선 급 금 액	일금 원정(W) VAT 포함
	계 약 보 증 금	각서대체
	지 체 상 금 율	1.5/1,000
	계 약 기 간	
	기 타 사 항	
<p>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갑”)과 계약상대자(이하 “을”)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1.산출내역서 1부 2.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4.과업내용서(별첨) 1부 5.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 년 월 일</p>		
<u>발 주 처(갑)</u>		<u>계약상대자(을)</u>
주 소 : 경기 이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주 소 :
상 호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상 호 :
총 장 : 이수형 (인)		대 표 : (인)

<산출내역서>

용역내역서

용역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식			

산출내역서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 이 하 여 백 -		
	합 계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효력) “갑”과“을”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품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본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계약체결 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용역의 기간) 용역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한 일()을 기준으로 하되 결과물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제3조(개발형식) 별도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개발한다.

제4조(하자보수) 본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반 구매계약조건을 준용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선급금) “갑”은 “을”에게 선급금은 5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용역의 특수성상 최종산출물의 완성품의 검수확인을 거쳐 계약금액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제6조(계약 위반)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갑”의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을”은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조건) 용역의 대금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산출내역서의 과다계상이 있었을 때는 차후, 다시 본 용역의 대금을 재산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용역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용역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용역발주자를 “갑”이라 한다.
2.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같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예사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갑”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처리)

- ①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물품용역계약특수조건,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납 품)

-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갑”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 (보증)

-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갑”은 납품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을”은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

-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금액의 정산)

본 계약체결 후 제작내역서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본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금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을”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용역명 :

수량 : 식

계약금액 : 일금 원정(W)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보증금을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귀속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사업자번호 :

주소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 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끝.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용역 표준 계약서>

CK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계 약 자	발 주 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위임자):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W) VAT 포함
	선 급 금 액	일금 원정(W) VAT 포함
	계 약 보 증 금	각서대체
	지 체 상 금 율	1.5/1.000
	계 약 기 간	
	기 타 사 항	
<p>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갑”)과 계약상대자(이하 “을”)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1.규격 및 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2.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1 년 월 일</p> <p>발 주 처(갑) 계약상대자(을)</p> <p>주 소 : 경기 이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주 소 :</p> <p>상 호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상 호 :</p> <p>총 장 : 이수형 (인) 대 표 : (인)</p>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연번	품명	세부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 이 하 여 백 -				
합 계						